

初等學校 學校運營委員會의
發展的인 活用方案에 관한 研究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仙 喜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教授 李 泰 鍾

2004年 2月

金仙喜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

전세성



審查委員

정현주



審查委員

이태경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年 2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1.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	4
2.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8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5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22
5.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25
6.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례	28
7. 선행 연구 고찰	38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42
1. 분석모형	42
2. 조사설계	44
IV. 분석 결과 및 논의	46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6
2. 분석 결과	47
3. 종합 논의	89
V. 결론 및 제언	97
1. 요약	97
2. 결론 및 제언	100
■ 참고 문헌	104
■ Abstract	106
■ 부록	109

표 목 차

〈표 II-1〉 설립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22
〈표 II-2〉 설립별 운영위원 정수 현황	22
〈표 II-3〉 운영위원정수별 학교수	23
〈표 II-4〉 운영위원 선출방식	24
〈표 II-5〉 운영위원 연령분포	24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내용 및 문항	45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6
〈표 IV-2〉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	48
〈표 IV-3〉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의 바람직성	49
〈표 IV-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	50
〈표 IV-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타당성 정도	52
〈표 IV-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인지 시기	55
〈표 IV-7〉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 정도	56
〈표 IV-8〉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준수 정도	57
〈표 IV-9〉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의 실천 정도	59
〈표 IV-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관	60
〈표 IV-11〉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62
〈표 IV-1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	63
〈표 IV-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	65
〈표 IV-14〉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학교경영에의 반영	67
〈표 IV-15〉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한 견해	68
〈표 IV-1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	70
〈표 IV-1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견해	71

〈표 IV-18〉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73
〈표 IV-19〉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75
〈표 IV-20〉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적격자에 대한 견해	77
〈표 IV-21〉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기능에 대한 견해	78
〈표 IV-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견해	80
〈표 IV-23〉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요망되는 학교장의 역할	82
〈표 IV-24〉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비요건	84
〈표 IV-25〉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86
〈표 IV-26〉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항	88

그 림 목 차

〈그림 III-1〉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연구 분석모형	43
--------------------------------	----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인, 지역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교육계는 물론 일선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계는 수요자의 관점보다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 단위로 출범하였다.¹⁾

이에 따라 1995년 8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 하반기에 전국 355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되었다. 1996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초·중등 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 근거를 변경,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1999년 8월 ‘초·중등 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으로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2000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²⁾

1)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II(서울: 사회교육문화사, 2000), p.9.

2) 상계서, p.5.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즉, 학교구성원인 교원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의 학교구조는 공급자 위주의 경영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획일적, 일방적인 교육만을 실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기업 및 지역사회간의 상호불신으로 학교공동체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대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 ‘좋은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동하는 체제 마련이 절실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족으로 학부모 및 교사 등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불만이 비등하게 제기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³⁾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달성을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기구이다.⁴⁾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령과 조례의 미비, 위원 선출의 비민주성, 회의방법의 비전문화와 비민주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부족 등으로 그 설립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고 초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

3) 전재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연구(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pp.1~2.

4)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우수 사례집(서울: 교육부, 2000), p.9.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주체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인 면과 운영 면에서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탐색하고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이며, 지방교육자치제 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을 알아본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효과 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발전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질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

1)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세계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교육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여 학교교육의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지금까지 지속적인 교육 개혁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여기로부터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신(新)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속화되었다. 5·31 교육개혁(안)에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9개의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으로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이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해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⁵⁾ 우선 학교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만을 실시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가 이렇게 교육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5) 교육개혁위원회,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서울: 교육부, 1995), pp.29~33.

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 수요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학교를 경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교사들도 그러한 입장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제 학교의 자율성을 중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를 도입하여 학교의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학교와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한 학교간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책임경영제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높은 효능감이 나타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관심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⁶⁾ 또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한 학교 대부분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참여도, 학교 효과성 제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효과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배경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이제까지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6) 박세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조건과 성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제4호(2000), pp.53~56.

권위적인 통제를 청산하고, 학교교육의 참여 주체들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⁷⁾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성격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⁸⁾

교육개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둘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운영위원의

7)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서울: 교육과학사, 2002), p.243.

8)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전계서, p.7.

선출 방법,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사용 범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③ 시·도 운영위원회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감이 각 시·도의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후에 시·도 의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교육감이 공포를하게 된다.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 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④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위원의 정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법규적 측면이나 실행상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⁹⁾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9)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서울: 올지문화사, 1996), p.9. ; 전제상, 전계서, pp.10~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재심의 의결정족수를 일반정족수보다 엄격한 특별정족수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서 참가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2.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실현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즉, 중앙이나 지역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과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개별학교로 위임 혹은 이양하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권한의 부여에 걸맞게 학교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¹⁰⁾

10) 윤정일 외, 전제서, p.255.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장이 단위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혹은 행정가 통제 모형에 의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운영의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바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전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그를 바탕으로 단위학교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와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연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교육 운영의 책임을 분담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¹²⁾

최희선¹³⁾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개념적 의미는 크게 단위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확대, 전문 조직과 전문가로서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재인식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Oswald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장점과 극복해야 할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⁴⁾

Oswald가 제안한 장점은 학교 지도자에 관한 교사의 궁극적인 태도 촉진, 교사의 헌신도와 사기증진, 고의적인 결근이나 이직율 감소, 학교·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간의 관계에 대한 공적인 신뢰감 증가, 학생

11) 김성열, 「학교자율책임경영제의 확립」, 새교육(1999. 5)

12) 윤정일 외, 상계서, p.256.

13) 최희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왜 필요한가」, 교육월보(1995), p.30.

14) L. J. Oswald, *School-Based Management: Rational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Oregon School Study Council, 1995), p.3.

의 요구에 민감한 프로그램 제공, 보다 높은 질의 의사결정과 책무성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은 행정가와 교사들의 학생 학부모 역할에 대한 마지못한 인정, 관련자들의 훈련과 협동적 태도 부족, 행정적인 법률과 규칙의 제한과 불충분한 지원,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다. 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경영과 운영분야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제공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단점에 대한 대안을 잘 준비하여 시행한다면 학교를 보다 효과적인 학습환경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단위학교 책임경영 제의 구체적 확립방안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 영역은 크게 교육과정, 예산 또는 재정, 인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lune과 White 는 이 세 가지 단위학교 책임경영 영역의 분권화 정도와 관련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 모형의 네 가지 범주를 개발하였다.¹⁵⁾

첫째, 예산편성, 교육과정운영, 인사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의사결정이 분권화된 포괄적인 모형이다.

둘째, 예산과 인사만이 분권화된 모형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은 지역 수준에서 중앙집권제에 의해 결정되는 모형이다

셋째, 예산만이 분권화 되고 인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은 중앙 집권적인 모형이다.

15) W. H. Clune and P. A. White, *School-Based Management: Institutional Variation, Implementation, and Issue for Further Research*(Center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1998), p.16.

넷째, 분권화 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인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은 중앙집권적인 모형이다.

이 네 가지 모형은 예산, 교육과정, 인사 세 가지 모두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제공하지만 구조화된 단위학교 책임경영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경영책임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학교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교원인사에 대하여 학교 경영자의 의견이 보다 존중되고,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

둘째, 학교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참여도를 높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는 학생생활지도, 학교운영 자문과 학교재정 지원 등의 영역에 참여하고, 교사에게는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계획 수립 등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한다.

넷째, 학교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더불어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이다. 자체평가가 학교경영의 개선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고, 개별학교지원 정책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실현에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기구가 학교운영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볼 때,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교육자치와 지역주민 참여

(1)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 참여의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지역단위의 교육자치와 함께 각급 학교의 교육자치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은 지역주민이 주민정신 구현에 있으므로 학교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첫째, 학습권 보장으로써, 국민은 교육의 주권을 가진 학습의 주체로써 모든 교육활동과 교육제도에 대하여 관여할 권리를 하나의 자연권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주민, 그리고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 생활 양식의 습득과 바른 성장을 돋는데 있다.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는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주민 참여의 방법

지방교육자치구현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의 방법은 크게 두 개의 형태, 즉 개별적·집단적 참여와 제도적·비제

16)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장학자료(1998.5), pp.170~171.

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여기에서 개별적 참여란 지역주민이 교사나 교육행정가가 되어 교육 사무를 직접 담당 또는 간접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육 활동, 각종 위원회나 공청회, 교사와 상담을 통한 참여가 있다. 집단적 참여란 학회의 결성이나 이익집단과 같이 집단이나 조직에 가담하여 참여하는 형태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동창회를 통한 참여가 있다.

제도적 참여란 제도화되어 있는 지방의회나 국회 등 공식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는 방법을 말하며 비제도적 참여란 개별적 혹은 일부가 교육활동에 대해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간접 참여 방법이다.

(3)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해방 직후부터 우리나라에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동이 조직화되어 있었다. 1945~1952년간에 학교의 교육재정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후원회, 1953~1962년간에 학생 교육을 협의하고 재정적 후원을 담당한 사친회, 1963~1969년간에 학교교육에 대한 물질적 후원을 담당한 기성회, 그리고 1970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감당한 육성회 조직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학부모 단체들의 발전 역사를 보면, 학부모의 학교교육에의 참여는 대부분 재정적 후원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태동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전의 학부모 단체가 학교에 대한 재정적 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정적 후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축소시키고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라는 이전의 학부모 단체가 염두도 낼 수 없었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17) 상계서, p.172.

는 단순히 학교교육 지원이라는 학부모 단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학교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운영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¹⁸⁾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참여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를 이론적 측면에서 학부모 참여의 법적 지위면, 참여 활동의 당위성, 학교교육 참여 활동으로 구분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참여의 법적 지위 면에서 보면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교사·설립자 그리고 국가가 교육을 할 권리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이때 부모의 교육권은 공교육 운영에 대한 참가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상 부모의 교육의무는 학생에 대해 교육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참여 활동의 당위성 면에서 학부모 참여란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천, 평가 등 주요 단계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지원, 조력, 의사결정활동, 그리고 효과적 교육환경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주삼환²⁰⁾은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학부모 참여를 통해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학교의 프로그램 개선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며 이때에 학교가 어떤 결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인력자원을 제공하게 되고 학부모는 학교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점을 들

18) 윤정일 외, 전계서, pp.257~259.

19) 경기도교육청, 전계서, p.123.

20) 주삼환, 장학교장론 특강(서울: 성원사, 1998), p.266.

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불가분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참여할 때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활동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활동에는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을 참관하는 일에서부터 보조교사, 자원교사, 유급봉사, 학교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와의 의사 소통, 학교의 의사 결정 및 정책수립에 참여,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실현활동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의 활발한 교육참여는 학교나 교사의 인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적 효과를 상승시킨다. 앞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고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법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입장에서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협력자로서 학교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모니터 함으로써 학교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의견 제시자, 학교운영에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후원자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들은 학부모와 외부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²¹⁾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²²⁾

(1)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21) 경기도교육청, 전계서, pp.132~134.

22) 초·중등교육법 제2절(제31조~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제58조~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1999. 8. 31개정).

사립학교에서의 설치를 종전과는 달리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의원의 정수, 선출은 시행령을 따르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보았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과 조례의 관계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

(2)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40~50%,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30~40%,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10~20%의 비율로써 학생 수 200명 미만인 학교: 5~8인,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 9인~12인, 1000명 이상인 학교: 13~15명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원위원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감도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실업계고교는 학부모 위원 30~40%, 지역위원 30~50%, 교원위원 20~30% 범위 내에서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역위원 중 50%

이상은 사업자로 선출한다.

(3)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참여인사에 대한 정당인 금지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운영위원은 2개교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학생의 졸업·전학, 교사의 전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시에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4)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기 및 방법에서 위원의 선출시기는 학부모 위원 및 교사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 방식 또는 학급별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 중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선출한다.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교직원 전체회의는 필요한 경우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학교운영위원의 의무와 임기

학교운영위원의 의무에서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연수 시 교통비 지급, 회의 및 경비 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또

는 특수회계에 책정,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되고 모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초·중등 교육법 제32조에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는 학교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심의·자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가는데 기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 구성 → 초안 작성 → 1차 의견수집 → 1차 시안 작성 → 최종 시안 작성 및 보고서 제출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전게서, pp.37~79.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에 대한 심의,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의 설정,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장래 진로에 따른 과정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심의·자문한다. 그리고 특별활동과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도덕, 국어, 국사, 생활외국어, 고등학교는 윤리, 국어, 국사를 제외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선정한다.

(5)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특기·적성교육활동은 국가 교육과정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수학여행이나 학생야영 활동에 비용 부담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화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추구한다.

(6)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교육장, 교육감 등)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거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으나, 1997년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학교장 추천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각 대학이 학교장 추천제 특별전형 도입을 확대하고 지원자격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천절차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확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장추천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한 것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효율적 · 합리적 관리 및 지원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통해 학교체육의 교육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 사항을 제외한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 · 자문할 수 있다. .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 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및 촌지수수 등과 관련된 학교부조리가 일소되고,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12) 기타 대통령령,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²⁴⁾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

24)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제2636호, 2000. 5.18.

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을 말한다.

이상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계획하고 추진과정을 지원하며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2002년 4월 1일 현재)

1) 설립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전체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10,469교 중에서 10,466교로 100% 구성되었다.

<표 II-1> 설립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학교수)

구 分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국공립	5,385	2,180	1,097	50	8,712
사 립	74	668	936	76	1,754
계	5,459	2,848	2,033	126	10,466

2) 설립별 운영위원 정수 현황

<표 II-2> 설립별 운영위원 정수 현황

(단위: 명)

구 分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계	구성 비율	비 고			
	초		중		고		특수학교							
	국·공	사립	국·공	사립	국·공	사립	국·공	사립						
학부모위원	27,713	347	10,769	2,861	5,595	4,797	206	257	52,545	46%				
교원위원	21,726	267	8,348	2,226	4,297	3,731	162	208	40,966	36%				
지역위원	9,307	152	3,705	1,175	2,963	2,630	76	108	20,116	18%				
계	58,746	766	22,822	6,262	12,855	11,158	444	573	113,627	100%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10,466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의 총 현원은 113,627명이다. 학부모위원의 정수는 52,545명, 교원위원의 정수는 40,966명, 지역위원의 정수는 20,116명이다.

3) 운영위원 정수별 학교수

<표 II-3> 운영위원 정수별 학교수

(단위: 학교수)

정수 구분	5명	6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계
초등학교	53	135	1,785	166	252	273	806	944	128	898	5,440
중학교	48	68	614	283	246	178	446	503	70	246	2,702
고등학교	19	15	161	186	176	191	395	478	105	306	2,032
특수학교	30	6	32	30	15	7	6	0	0	0	126
계	150	224	2,592	665	689	649	1,653	1,925	303	1,450	10,300

운영위원 정수별 학교현황은 총 10,300교 중 위원정수가 8명인 학교가 2,592교(25%)로 가장 많고 13명인 학교가 1,925교(19%), 12명이 1,653교(16%), 15명이 1,450교(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운영위원 선출방식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은 <표 II-4>와 같이 총 10,300교 중 78%인 8,069교가 전체 직선으로 선출하였고 22%인 2,231교가 대표를 통한 간선으로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위원의 선출방식은 단배수 추천에 의한 선출이 9,225교(90%), 2배수 추천이 872교(8%), 3배수 추천 등이 203교(2%)로 파악되었다.

<표 II-4> 운영위원 선출방식

(단위 : 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국 공 립	학부 모 위 원	전체 직선	4,344	1,643	834	41	6,862
	교원 위원	대표 직선	1,022	432	262	9	1,725
		계	5,366	2,075	1,096	50	8,587
사 립	학부 모 위 원	직선(단배수)	5,366	2,075	1,096	50	8,587
	교원 위원	2배수 이내 추천	-	-	-	-	-
		3배수 추천 등	-	-	-	-	-
합 계	학부 모 위 원	계	5,366	2,075	1,096	50	8,587
	교원 위원	전체 직선	38	465	645	59	1,207
		대표 직선	36	161	292	17	505
	학부 모 위 원	계	74	626	937	76	1,713
	교원 위원	직선(단배수)	32	258	316	32	638
		2배수 이내 추천	39	308	486	39	872
	학부 모 위 원	3배수 추천 등	3	60	135	5	203
	교원 위원	계	74	626	937	76	1,713
		전체 직선	4,382	2,108	1,479	100	8,069
	학부 모 위 원	대표 직선	1,058	593	554	26	2,231
	교원 위원	계	5,440	2,701	2,03	126	10,300
		직선(단배수)	5,398	2,334	1,411	82	9,225
	학부 모 위 원	2배수 이내 추천	39	308	486	39	872
	교원 위원	3배수 추천 등	3	60	135	5	203
		계	5,440	2,702	2,032	126	10,300

5) 운영위원 연령분포

<표 II-5> 운영위원 연령분포

(단위: 명)

구 分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초등학교	700	19,032	21,771	13,838	4,160	59,501
중 학 교	101	4,680	16,920	4,978	2,396	29,075
고등학교	37	1,943	14,845	4,915	2,267	24,007
특수학교	11	205	496	195	109	1,016
계	849	25,860	54,032	23,926	8,932	113,599
비율(%)	0.7%	22.7%	47.6%	21.1%	7.9%	100%

운영위원 113,599명 중 연령분포도는 40대가 54,032명(48%), 30대가 25,860명(23%), 50대가 23,926명(21%), 기타 9,781명(12%)이다.

5.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1) 제도상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학교재량권의 미흡, 역할 갈등, 심의권 행사와 관련된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재 단위학교는 단위학교 경영책임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선 인사와 관련하여 단위학교는 주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인사권은 모두 시·도 교육청에 있고, 학교는 단지 교내 인사의 배치 정도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관련해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몇 과목 정도의 교과목 선택권만을 가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산

25) 윤정일 외, 전개서, pp.250~253.

편성·운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1학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예산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인 현 상황에서 학교가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둘째, 학교에 따라서는 역할 갈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학교운영에 참여시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과 운영위원들간에 학교경영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많을 경우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간에 교육관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학교에 뜻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을 몰고 올 수 있다. 특히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교원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 학교장이 하나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중적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감이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소외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 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간에 역할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그들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셋째, 심의권 행사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것에 대해 학교경영권의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폭넓고 세부적이어서 지나친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운영 등은 매우 전문적인 의견과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집단인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결정할 수 있어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원의 사기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 운영상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는 제도상의 문제와 별도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위원 선출에 있어서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사 결과들은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위원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떤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무관심과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출이 어렵고, 그런 이유로 특별한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지원 혹은 추천되어 그들만으로 편파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이 특정 집단의 이해나 특정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형편이 좋은 편이지만,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갖춘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이 부족하여 위원 선출에 어려움이 많고 선출된 위원도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운영위원들이 많은 경우 회의 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반적으로 운영위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많은 일을 운영위원들이 모두 모여 결정하다보니 운영위원들이 회의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의 운영 협의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협의내용을 충분히 알고 집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사전에 안건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위원들도 사전에 관련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협의와 심의·의결한 내용을 일반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6.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례

학교단위 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각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자치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사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²⁶⁾

미국은 주마다 그리고 같은 주안에서도 교육구(school district)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형은 없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대동소이하다.

26) 송인호,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해외교육정보(1996. 2), pp.97~99.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의결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권고나 제안을 하는 의결기구로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장, 교사 및 교직원,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에 공유된 교육방침을 통해 바람직한 학습 풍토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학교교육계획의 달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지역사회 및 교육청의 지원을 구한다. 셋째, 관계법률, 규정 및 계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넷째, 학습자료의 선정, 특별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 향상에 적합한 문제들에 관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며,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 서무직원과 고용원도 참여 할 수 있고 학부모, 학교후원 기업대표, 학생도 참여하고 있으며 대략 위원정수가 는 12~16명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있어 학부모위원은 학년말인 6월에 교지나 뉴스레터 또는 학교 게시판에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게시 하며 9월 새 학기에 선출된다. 본인의 지원이나 다른 학부모가 추천한 후보자 중 9월 총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투표에 의하거나 또는 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출된다.

교직원위원 중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교직원 위원 선거는 매년 첫 학기의 첫 달(9월)에 실시된다. 6월부터 후보자 지

명이 시작되는데 지원자 중 9월에 실시되는 전체교사, 전체직원의 총선 거에서 선출된다.

지역인사위원은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의로 2명을 선정하고, 교육감 1명을 지명한다.

학생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직원위원 선출과정과 같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학교장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연 4회 이상 불참하는 위원은 의장이 연락을 취해 임무수행 의사를 타진하여 처리하며, 6회 이상의 불참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및 간사 1인을 선정한다. 위원 중 누구라도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장은 예외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에 한한다. 의장은 사전에 의제를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며,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하고 의장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위원회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최소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참여가 개방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장 채용

학부모 대표자와 교직원이 면접팀의 일원이 된다. 면접팀의 인원구성은 교육청 인사 부서가 담당한다. 운영위원 중에서 반드시 1명 이상이

면접팀에 포함된다. 면접팀에 포함된 교사 대표나 행정가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이라도 면접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담당 행정가의 권한으로 그들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학교장 선정의 최종 승인은 교육위원회(교육청)가 한다.

② 교사, 임시교사, 서무지원, 고용원의 채용

교사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사 지원자 명단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선정하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은 교육청 단위의 팀에서 선정한 지원자 명단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내의 선정소위원회와 함께 학교장이 선정하며 최종 승인은 교육위원회가 한다.

③ 학교 예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학교에 배정된 예산 지출내역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④ 학교목표 설정과 학생 생활지도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계획을 포함한 제반 학교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근태 규정(attendance policy)의 틀 안에서 학생 생활지도 방침에 대한 결정을 한다. 또한 관계자들이 모여 학생 활동을 계획한다.

2)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²⁷⁾

영국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교장과 협력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에 대한 공식기구로서 학교위원회가

27) 강사민,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해외교육정보(1996. 3), pp.35~53.

있다. 1902년 및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다. 1986년 교육법에 의해 위원들은 교육과정, 성교육, 학교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학부모에게 연례보고서를 송부하는 의무도 갖게 되었다.²⁸⁾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방면으로 강화·확대되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장, 교사위원, 교육청임명위원, 선출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학교규모(학생수)에 따라 9~16명으로 구성돼 있다. 6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가진 학교의 경우 총 위원수는 19명이며 학부모위원이 5명, 교장, 교사위원 2명 교육청임원위원 5명, 선출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진행 및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학부모위원 임기는 4년이고, 자격은 학부모이어야 한다. 학부모들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 중 그 학교의 학부모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위원직을 사임할 필요는 없으나 원한다면 사임할 수 있다. 자격만 해당된다면 재선출 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가 학부모 또는 그 지역의 5세~16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 임명할 수 있다.

교원위원 중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교원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며 재선출이 가능하다. 교원위원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직도 상실된다.

교육청임명위원 임기는 4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교육청임명위원이 모여 선출한 위원으로 이들은

28) 성삼제, 「영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서울교육(1997), p.96.

2/3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이 위원들 중에는 그 지역의 산업체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재임명될 수 있고 선출해준 위원들에 의해 해임되지는 않는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교육과정 심의 및 지원 기능

교육과정에 대해 교장, 교사, 위원,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되고, 그 운영이 잘 되도록 교장을 도와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은 국가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이고, 중학교의 경우 성교육이 포함된다.

② 예산 관리면

학교의 재정은 주로 교육청에 의해 충당된다. 그 외 기부금, 학교건물 임대료 등이 학교의 수입원이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산집행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하나는 교육청이 부과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직 학교교육의 목적으로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교직원 임명, 관리 · 해고

학교교직원의 고용주는 교육청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장과 함께 교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교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위원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에게 교직원 채용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직원의 수를 결정하고, 직원이 사직할 경우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없앨 것인가를 결정한다.

교장을 채용하려면 위원회는 신문에 광고를 내야하며 채용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기능은 소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다. 교육국장이나 교육청의

대표는 채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준다. 채용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으며, 교육청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건강상 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감을 학교에 둘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교감 임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때 교장과 교육국장은 그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청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교감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사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 여부를 결정한다. 충원한다면 충원할 교사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내야 한다. 임명 절차는 교장, 교감의 경우와 동일하다. 교육청은 타 학교의 교사를 전보 발령할 수는 없으나 지원자를 추천할 수는 있다. 교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에 채용 광고를 내야 한다.

④ 정보 제공

위원회는 일정한 정보를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매년 학부모와 예비학부모를 위하여 학교안내책자를 발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학검사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 등 위원회는 학부모에게 송부할 연례보고서를 준비하고 발간하여야 한다.

⑤ 장학감사

의무적으로 4년마다 1회씩 받게 된다. 장학감사자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5주안에 감사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장학청, 교육청,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수준, 교육의 질, 자원관리의 효율성, 학생의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발달 정도 등이다. 보고서를 받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요약서 사본을 모든 학생의 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보고서와 요약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사본료를 받을 수 있다.²⁹⁾

3) 독일의 학교협의회³⁰⁾

독일의 경우 학교의 임무는 독일 연방정부의 헌법(기본법)과 주헌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장」은 전체 교사협의회의 의장이며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전체 교사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학교의 모든 업무관리와 책임을 진다. 학교장의 구체적인 임무는 학생의 입학, 졸업, 취학의무 이행, 교사 임용배치 및 시간계획과 장학계획 편성 등이며, 외부에 대해 학교를 대표한다.

「교사협의회」(Lehrerkonferenz)는 학교의 수업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조치를 협의하고 결정하며, 서로의 지식과 관심을 교환하며 교사들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원한 협의체이다. 전체 교사협의회의 결정은 학교장과 교사가 따라야 한다. 협의회의 결정이 법규정에 위배되거나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되면 교육청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이 있기까지는 그 결정사항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학교협의회」(Schulkonferenz)는 학교경영과정상의 주요 문제를 협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데, 그 근본취지는 각 이해집단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1) 학교협의회의 취지 및 구성

학교협의회는 학부모, 학교장, 교사, 학생들 간의 협력과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 책임 및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교

29) 이영남,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pp.10~11.

30) 김정숙, 「외국 학부모의 학교지원 및 참여활동(독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1996), pp.53~54.

의 공동조직체이다. 학교협의회는 최소한 14명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교장은 학교협의회 의장이 되고 학부모협의회 의장은 의장대리가 된다. 학교협의회에는 교사대표 6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이 참여한다.(단,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대표 없이 학부모대표 5명만이, 학부모협의회가 없으면 일반 학부모대표 6명이 참여하게 된다.)

(2) 학교협의회의 기능

학교협의회는 학교경영,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 학생들의 협력,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개 그룹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교협의회는 교사협의회와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교육문제 특히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 진급 등에 관한 제안권을 가진다.

특히, 학교 기숙사 규칙의 제정, 학교협의회에 관한 학교의 결정, 학급 사항과 숙제에 관한 결정, 학교의 규정과 행정규정의 일관성 있는 상행 결정,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정학, 제적 등), 학교 시설, 설비의 확보와 설치, 시설 및 그 사용 청구, 학교이름의 부여, 학생진급에 관한 문제, 소풍, 도보여행, 수련회, 산업시찰, 박물관 견학 등과 같은 학교행사, 동호인 활동(서클모임) 등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를 하게 된다

(3) 학교협의회의 운영

학교협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타인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교사가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공무원법과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특별한 대표자가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협의회 출석위원 2/3의 동의로 일시 또는 계속적으로 참여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학교협의

회는 적어도 한 학기당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적어도 위원 1/3의 제안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4)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례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인사가 상호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과 결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교장·교사·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제도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자치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물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점이 현재 우리 나라의 기부금조성 문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 조직들이 재정적인 지원의 기능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깊이 관여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운영은 서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나라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미국·영국·일본 모든 나라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선출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지역 특성이나 학교 실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교사·학생·지역인사·교육청 전문인사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명실공히 지역중심의 학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참여 집단의 이해 관계에 얹매이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공동책임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자율적 운영과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끝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위원을 참여시켜 다양한 요구를 학교경영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급자 중심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찾고자 수행된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김인길³¹⁾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에서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집단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교, 학년, 학급 등 각 수준별 학부모 회의에 정례화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회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일반인(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31) 김인길,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이연호³²⁾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주로 문헌분석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정상에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며 소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구성에 관한 교사위원의 수가 적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함으로써 야기되는 선출과정의 공정성 확보문제, 소위원회 활성화 문제, 위원의 임기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임성민³³⁾은 ‘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 관한 교사들의 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학교의 예산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높은 인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행한 교사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위원의 민주적이고 엄정한 선출 절차가 필요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참여의식의 부족과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공동체 책임의식의 부족이므로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학교운영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열린 학교운영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 및 융통성 있는 학교운영을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경영에 반영하고 있어 학교경영이 긍정

32) 이연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33) 임성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석재³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학부모위원은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발전을 곤란하게 하기보다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교장은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민주적·수평적 사고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들의 역할, 책무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승환³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직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및 취지 이해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운영조직의 문제점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의 지원자 부족에서 지역인사의 위축, 학부모위원의 지원자, 교원위원의 지원자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위원회의 각 집단을 대표하는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효율화 방안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홍보유인물 배포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운영위원들의 전문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책임지고 업무를 맡아 수행할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34) 이석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35) 김승환,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백승조³⁶⁾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일종의 직능대표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행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자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석영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6) 백승조,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운영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발전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운영 실태와 효과를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단위학교 중심의 민주적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육 주체이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인 교사들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수렴되고 반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분석 영역의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효과의 인식과 문제점 파악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영역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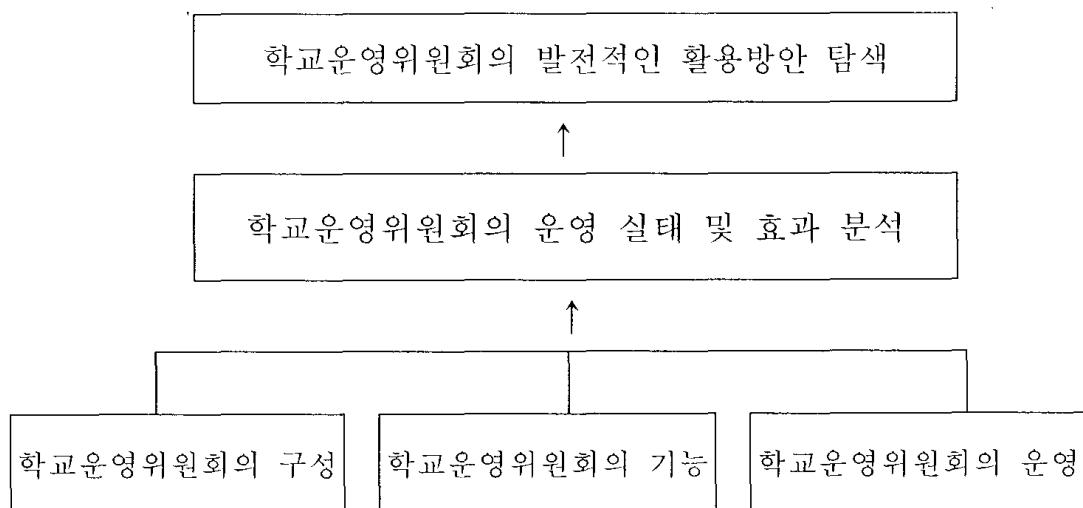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권한의 공유와 영향력 행사는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도 학교운영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석 영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설정하였다.

둘째, 학교참여의 범위가 학교운영의 결정과정, 즉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기능에 대한 실태 및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두 번째 분석 영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셋째, 참여에 대한 교육적 태도 효과는 주로 참여자들의 학교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도나 효능성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의 동기부여와 태도변화를 동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발전방향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면을 세 번째 분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분석 영역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효과면의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그림 III-1>과 같은 분석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림 III-1>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연구 분석모형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경상북도 경주시 동, 읍, 면 소재 18개 공립초등학교의 부장교사와 교사들을 무작위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300부를 배부하여 총 268부를 회수하여(회수율 89.3%)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지이다(부록 참조). 본 설문지는 총 25 문항으로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효과 영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 영역을 각각 구성, 기능, 운영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내용 및 문항

영 역	설 문 내 용	해당문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효과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	1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의 바람직성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 정도	3
		4(①~⑯)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타당성 정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인지 시기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 정도	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 준수 정도	7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규정의 실천 정도	8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관 정도	9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1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	1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	12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학교경영에의 반영 정도	13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한 견해	1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	1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견해	16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17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18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적격자에 대한 견해	19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기능에 대한 견해	20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견해	21
	발전적 운영을 위해 가장 요망되는 학교장의 역할	22
	발전적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의 구비요건	23
	발전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24
	발전적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항	25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효과 그리고 발전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교사집단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02	38.1
	여	166	61.9
교직경력	5년 미만	16	6.0
	5~10년 미만	31	11.6
	10~20년 미만	102	38.1
	20년 이상	119	44.4
학교규모	11학급 이하	65	24.3
	12~35학급	80	29.9
	36학급 이상	123	45.9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128	47.8
	무경험	140	52.2
계		268	100.0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61.9%로, 남자교사 38.1%보다 많았다. 교직경력 별로는 20년 이상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 38.1%, 5~10년 미만 11.6%, 5년 미만 6.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 별로는 36학급 이상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35학급 29.9%, 11학급 이하 24.3% 순으로 차지하였다.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 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52.2%로, 경험이 있는 교사 47.8%보다 많았다.

2. 분석 결과

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효과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의 민주성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이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50.0%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6.0%로 매우 적었고, 보통이다에 44.4%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20년 이상 교사가 20년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15$, $p<.05$).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학교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여부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의 민주성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1 (1.0)	5 (4.9)	36 (35.3)	44 (43.1)	16 (15.7)	102 (38.1)	9.37 (4)	0.052
	여	4 (2.4)	6 (3.6)	82 (49.4)	63 (38.0)	11 (6.6)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	2 (4.2)	24 (51.1)	21 (44.7)	-	47 (17.5)	17.15 (8)	0.029*
	10~20년 미만	3 (2.9)	4 (3.9)	53 (52.0)	34 (33.3)	8 (7.8)	102 (38.1)		
	20년 이상	2 (1.7)	5 (4.2)	41 (34.5)	52 (43.7)	19 (16.0)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 (1.5)	5 (7.7)	25 (38.5)	28 (43.1)	6 (9.2)	65 (24.3)	9.75 (8)	0.283
	12~35학급	2 (2.5)	-	41 (51.3)	32 (40.0)	5 (6.3)	80 (29.9)		
	36학급 이상	2 (1.6)	6 (4.9)	52 (42.3)	47 (38.2)	16 (13.0)	123 (45.9)		
학교운영 위원회 경험 유무	경험	3 (2.3)	7 (5.5)	48 (37.5)	51 (39.8)	19 (14.8)	128 (47.8)	9.32 (4)	0.054
	무경험	2 (1.4)	4 (2.9)	70 (50.0)	56 (40.0)	8 (5.7)	140 (52.2)		
계		5 (1.9)	11 (4.1)	118 (44.0)	107 (39.9)	27 (10.1)	268 (100.0)		

* p<.05, ** p<.01, *** p<.001

②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의 바람직성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의 바람직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3.8%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5.7%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되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47$, p<.01).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3>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의 바람직성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	6 (5.9)	19 (18.6)	60 (58.8)	17 (16.7)	102 (38.1)	14.47 (4)	0.006**
	여	5 (3.0)	31 (18.7)	36 (21.7)	75 (45.2)	19 (11.4)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2 (4.3)	8 (17.0)	11 (23.4)	20 (42.6)	6 (12.8)	47 (17.5)	12.13 (8)	0.145
	10~20년 미만	2 (2.0)	15 (14.7)	25 (24.5)	53 (52.0)	7 (6.9)	102 (38.1)		
	20년 이상	1 (0.8)	14 (11.8)	19 (16.0)	62 (52.1)	23 (19.3)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	12 (18.5)	6 (9.2)	32 (49.2)	15 (23.1)	65 (24.3)	14.90 (8)	0.061
	12~35학급	2 (2.5)	8 (10.0)	20 (25.0)	42 (52.5)	8 (10.0)	80 (29.9)		
	36학급 이상	3 (2.4)	17 (13.8)	29 (23.6)	61 (49.6)	13 (10.6)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2 (1.6)	20 (15.6)	14 (10.9)	71 (55.5)	21 (16.4)	128 (47.8)	14.55 (4)	0.006**
	무경험	3 (2.1)	17 (12.1)	41 (29.3)	64 (45.7)	15 (10.7)	140 (52.2)		
계		5 (1.9)	37 (13.8)	55 (20.5)	135 (50.4)	36 (13.4)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여부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 위원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55$, p<.01).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0.3%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8.2%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61.6%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V-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2 (2.0)	7 (6.9)	58 (56.9)	30 (29.4)	5 (4.9)	102 (38.1)	8.87 (4)	0.064
	여	3 (1.8)	10 (6.0)	107 (64.5)	46 (27.7)	-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	2 (4.3)	36 (76.6)	9 (19.1)	-	47 (17.5)	10.76 (8)	0.216
	10~20년 미만	2 (2.0)	5 (4.9)	67 (65.7)	26 (25.5)	2 (2.0)	102 (38.1)		
	20년 이상	3 (2.5)	10 (8.4)	62 (52.1)	41 (34.5)	3 (2.5)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2 (3.1)	5 (7.7)	37 (56.9)	17 (26.2)	4 (6.2)	65 (24.3)	17.43 (8)	0.026*
	12~35학급	-	2 (2.5)	58 (72.5)	19 (23.8)	1 (1.3)	80 (29.9)		
	36학급 이상	3 (2.4)	10 (8.1)	70 (56.9)	40 (32.5)	-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4 (3.1)	7 (5.5)	71 (55.5)	43 (33.6)	3 (2.3)	128 (47.8)	6.53 (4)	0.163
	무경험	1 (0.7)	10 (7.1)	94 (67.1)	33 (23.6)	2 (1.4)	140 (52.2)		
계		5 (1.9)	17 (6.3)	165 (61.6)	76 (28.4)	5 (1.9)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와 36학급 이상 교사가 12~35학급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3$, $p<.05$). 학교운영위원회 경험 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타당성 정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타당성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25.4%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9.0%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55.6%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8.1%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3.0% 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38.8%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0.3%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28.7%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 41.0%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6.6%로,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 25.7%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37.7%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26.5%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20.1%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53.4%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0.2%,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23.1%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46.6%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V-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타당성 정도

빈도 : 명(%)

문 항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	매우 타당	MEAN	계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4.1)	40 (14.9)	149 (55.6)	61 (22.8)	7 (2.6)	3.05	268 (100.0)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2.2)	29 (10.8)	104 (38.8)	111 (41.4)	18 (6.7)	3.40	268 (100.0)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11 (4.1)	66 (24.6)	110 (41.0)	80 (29.9)	1 (0.4)	2.98	268 (100.0)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16 (6.0)	82 (30.6)	101 (37.7)	62 (23.1)	7 (2.6)	2.86	268 (100.0)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 (4.1)	43 (16.0)	143 (53.4)	67 (25.0)	4 (1.5)	3.04	268 (100.0)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3.7)	52 (19.4)	125 (46.6)	75 (28.0)	6 (2.2)	3.06	268 (100.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3 (1.1)	31 (11.6)	99 (36.9)	113 (42.2)	22 (8.2)	3.45	268 (100.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0.4)	17 (6.3)	89 (33.2)	129 (48.1)	32 (11.9)	3.65	268 (100.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6 (6.0)	61 (22.8)	118 (44.0)	65 (24.3)	8 (3.0)	2.96	268 (100.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 (0.4)	35 (13.1)	130 (48.5)	92 (34.3)	10 (3.7)	3.28	268 (100.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 (0.4)	17 (6.3)	123 (45.9)	103 (38.4)	24 (9.0)	3.49	268 (100.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 (0.4)	32 (11.9)	104 (38.8)	114 (42.5)	17 (6.3)	3.43	268 (100.0)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1.5)	31 (11.6)	91 (34.0)	105 (39.2)	37 (13.8)	3.52	268 (100.0)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1.5)	26 (9.7)	99 (36.9)	110 (41.0)	29 (10.8)	3.50	268 (100.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2 (0.7)	12 (4.5)	132 (49.3)	103 (38.4)	19 (7.1)	3.47	268 (100.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3.0)	12 (4.5)	117 (43.7)	100 (37.3)	31 (11.6)	3.50	268 (100.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2.7%로 나타났고, 보통이다에 36.9%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6.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에 33.2%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27.3%,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28.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에 44.0%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8.0%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3.5%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48.5%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7.4%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6.7%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45.9%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8.8%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2.3%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38.8%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3.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에 34.0%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1.8%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1.2%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36.9%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5.5%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5.2%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49.3%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8.9%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7.5%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43.7%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인지 시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인지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7일 전에 알게된 교사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일 전 25.4%, 1~2일 전 19.4%, 심의 당일 6.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7일 전에 알게 되었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심의 당일에 알게 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89$, $p<.05$). 교직경력별로는 10~20년 미만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1~2일 전에 알게 되었고, 10~20년 미만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1~2일 전에 알게 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와 36학급 이상 교사가 12~35학급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7일 전에 알게 되었고, 12~35학급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1~2일 전에 알게 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7일 전에 알게 되었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1~2일 전에 알게 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30$, $p<.05$).

<표 IV-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인지 시기

구 분		심의 당일	1~2일 전	3~5일 전	7일 전	계	χ^2 (df)	p
성별	남	3 (2.9)	14 (13.7)	25 (24.5)	60 (58.8)	102 (38.1)	9.89 (3)	0.020*
	여	15 (9.0)	38 (22.9)	43 (25.9)	70 (42.2)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2 (4.3)	9 (19.1)	11 (23.4)	25 (53.2)	47 (17.5)	7.38 (6)	0.287
	10~20년 미만	8 (7.8)	26 (25.5)	20 (19.6)	48 (47.1)	102 (38.1)		
	20년 이상	8 (6.7)	17 (14.3)	37 (31.1)	57 (47.9)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4 (6.2)	10 (15.4)	17 (26.2)	34 (52.3)	65 (24.3)	10.05 (6)	0.122
	12~35학급	8 (10.0)	23 (28.8)	19 (23.8)	30 (37.5)	80 (29.9)		
	36학급 이상	6 (4.9)	19 (15.4)	32 (26.0)	66 (53.7)	123 (45.9)		
학교운영 위원회 경험 유무	경험	13 (10.2)	17 (13.3)	34 (26.6)	64 (50.0)	128 (47.8)	9.30 (3)	0.026*
	무경험	5 (3.6)	35 (25.0)	34 (24.3)	66 (47.1)	140 (52.2)		
계		18 (6.7)	52 (19.4)	68 (25.4)	130 (48.5)	268 (100.0)		

* p<.05, ** p<.01, *** p<.001

②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 정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수렴 노력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는 인식에 36.9%로, 활발하다고 인식하는 교사 18.3%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44.8%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7>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 정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3 (2.9)	25 (24.5)	52 (51.0)	22 (21.6)	102 (38.1)	6.92 (3)	0.075
	여	12 (7.2)	59 (35.5)	68 (41.0)	27 (16.3)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3 (6.4)	18 (38.3)	21 (44.7)	5 (10.6)	47 (17.5)	4.39 (6)	0.624
	10~20년 미만	4 (3.9)	34 (33.3)	44 (43.1)	20 (19.6)	102 (38.1)		
	20년 이상	8 (6.7)	32 (26.9)	55 (46.2)	24 (20.2)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2 (3.1)	27 (41.5)	23 (35.4)	13 (20.0)	65 (24.3)	9.77 (6)	0.135
	12~35학급	2 (2.5)	24 (30.0)	38 (47.5)	16 (20.0)	80 (29.9)		
	36학급 이상	11 (8.9)	33 (26.8)	59 (48.0)	20 (16.3)	123 (45.9)		
학교운영 위원회 경험 유무	경험	7 (5.5)	39 (30.5)	58 (45.3)	24 (18.8)	128 (47.8)	0.11 (3)	0.990
	무경험	8 (5.7)	45 (32.1)	62 (44.3)	25 (17.9)	140 (52.2)		
계		15 (5.6)	84 (31.3)	120 (44.8)	49 (18.3)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35학급 이하 교사가 36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 준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준수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준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3.0%로, 그렇지 않은 교사 12.3%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34.7%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15$, $p<.01$). 교직경력별로는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준수 정도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5 (4.9)	33 (32.4)	48 (47.1)	16 (15.7)	102 (38.1)	12.15 (3)	0.007**
	여	28 (16.9)	60 (36.1)	65 (39.2)	13 (7.8)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4 (8.5)	22 (46.8)	19 (40.4)	2 (4.3)	47 (17.5)	9.43 (6)	0.151
	10~20년 미만	16 (15.7)	27 (26.5)	48 (47.1)	11 (10.8)	102 (38.1)		
	20년 이상	13 (10.9)	44 (37.0)	46 (38.7)	16 (13.4)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2 (3.1)	18 (27.7)	34 (52.3)	11 (16.9)	65 (24.3)	24.96 (6)	0.000***
	12~35학급	19 (23.8)	21 (26.3)	31 (38.8)	9 (11.3)	80 (29.9)		
	36학급 이상	12 (9.8)	54 (43.9)	48 (39.0)	9 (7.3)	123 (45.9)		
학교운영 위원회 경험 유무	경험	10 (7.8)	38 (29.7)	64 (50.0)	16 (12.5)	128 (47.8)	10.01* (3)	0.018
	무경험	23 (16.4)	55 (39.3)	49 (35.0)	13 (9.3)	140 (52.2)		
계		33 (12.3)	93 (34.7)	113 (42.2)	29 (10.8)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4.96$, $p<.001$).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잘 자 키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chi^2=10.01$, $p<.05$).

④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의 실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의 실천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9.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에 38.1%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85$, $p<.05$).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36학급 이상 교사가 35학급 이하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1.95$, $p<.001$).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였

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60$, $p<.01$).

<표 IV-9>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의 실천 정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1 (1.0)	7 (6.9)	33 (32.4)	53 (52.0)	8 (7.8)	102 (38.1)	4.36 (4)	0.360
	여	3 (1.8)	14 (8.4)	69 (41.6)	65 (39.2)	15 (9.0)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1 (2.1)	-	29 (61.7)	14 (29.8)	3 (6.4)	47 (17.5)	18.85 (8)	0.016*
	10~20년 미만	1 (1.0)	11 (10.8)	35 (34.3)	49 (48.0)	6 (5.9)	102 (38.1)		
	20년 이상	2 (1.7)	10 (8.4)	38 (31.9)	55 (46.2)	14 (11.8)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 (1.5)	7 (10.8)	13 (20.0)	36 (55.4)	8 (12.3)	65 (24.3)	31.95 (8)	0.000***
	12~35학급	-	4 (5.0)	48 (60.0)	20 (25.0)	8 (10.0)	80 (29.9)		
	36학급 이상	3 (2.4)	10 (8.1)	41 (33.3)	62 (50.4)	7 (5.7)	123 (45.9)		
학교운영 위원회 경험 유무	경험	1 (0.8)	7 (5.5)	38 (29.7)	70 (54.7)	12 (9.4)	128 (47.8)	13.60 (4)	0.009**
	무경험	3 (2.1)	14 (10.0)	64 (45.7)	48 (34.3)	11 (7.9)	140 (52.2)		
계		4 (1.5)	21 (7.8)	102 (38.1)	118 (44.0)	23 (8.6)	268 (100.0)		

* $p<.05$, ** $p<.01$, *** $p<.001$

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참관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참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9.7%의 분포를 보였으며, 보통이다에 28.7%의 분포를 보였다.

<표 IV-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관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8 (7.8)	46 (45.1)	24 (23.5)	21 (20.6)	3 (2.9)	102 (38.1)	4.23 (4)	0.375
	여	15 (9.0)	69 (41.6)	53 (31.9)	22 (13.3)	7 (4.2)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5 (10.6)	21 (44.7)	12 (25.5)	5 (10.6)	4 (8.5)	47 (17.5)	11.87 (8)	0.157
	10~20년 미만	12 (11.8)	42 (41.2)	31 (30.4)	17 (16.7)	-	102 (38.1)		
	20년 이상	6 (5.0)	52 (43.7)	34 (28.6)	21 (17.6)	6 (5.0)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2 (3.1)	35 (53.8)	9 (13.8)	16 (24.6)	3 (4.6)	65 (24.3)	21.59* (8)	0.006
	12~35학급	9 (11.3)	36 (45.0)	20 (25.0)	13 (16.3)	2 (2.5)	80 (29.9)		
	36학급 이상	12 (9.8)	44 (35.8)	48 (39.0)	14 (11.4)	5 (4.1)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13 (10.2)	53 (41.4)	37 (28.9)	20 (15.6)	5 (3.9)	128 (47.8)	0.89 (4)	0.927
	무경험	10 (7.1)	62 (44.3)	40 (28.6)	23 (16.4)	5 (3.6)	140 (52.2)		
계		23 (8.6)	115 (42.9)	77 (28.7)	43 (16.0)	10 (3.7)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20년 이상 교사가 20년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59$, p<.01).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⑥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이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부모의 통제와 간섭 17.9%, 지역주민의 통제와 간섭 14.9%, 교육청의 통제와 간섭 6.0%, 교사의 통제와 간섭 3.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34.0%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지역주민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지역주민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청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6.66$, $p<.01$).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클수록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교사와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

는 교사보다 학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1>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구 분		학부모 의 통제와 간섭	지역 주민의 통제와 간섭	교사의 통제와 간섭	학교장 의 통제와 간섭	교육청 의 통제와 간섭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13 (12.7)	16 (15.7)	1 (1.0)	22 (21.6)	7 (6.9)	43 (42.2)	102 (38.1)	9.14 (5)	0.104
	여	35 (21.1)	24 (14.5)	8 (4.8)	42 (25.3)	9 (5.4)	48 (28.9)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7 (14.9)	3 (6.4)	3 (6.4)	9 (19.1)	9 (19.1)	16 (34.0)	47 (17.5)	26.66 (10)	0.003**
	10~20년 미만	21 (20.6)	17 (16.7)	2 (2.0)	30 (29.4)	4 (3.9)	28 (27.5)	102 (38.1)		
	20년 이상	20 (16.8)	20 (16.8)	4 (3.4)	25 (21.0)	3 (2.5)	47 (39.5)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2 (18.5)	11 (16.9)	1 (1.5)	11 (16.9)	4 (6.2)	26 (40.0)	65 (24.3)	9.62 (10)	0.474
	12~35학급	14 (17.5)	10 (12.5)	2 (2.5)	18 (22.5)	8 (10.0)	28 (35.0)	80 (29.9)		
	36학급 이상	22 (17.9)	19 (15.4)	6 (4.9)	35 (28.5)	4 (3.3)	37 (30.1)	123 (45.9)		
학교운 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20 (15.6)	15 (11.7)	4 (3.1)	29 (22.7)	9 (7.0)	51 (39.8)	128 (47.8)	5.56 (5)	0.351
	무경험	28 (20.0)	25 (17.9)	5 (3.6)	35 (25.0)	7 (5.0)	40 (28.6)	140 (52.2)		
계		48 (17.9)	40 (14.9)	9 (3.4)	64 (23.9)	16 (6.0)	91 (34.0)	268 (100.0)		

* p<.05, ** p<.01, *** p<.001

⑦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이해증대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 22.4%, 교사 및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20.9%, 학

교 경영의 민주성 확보 16.4%, 기타 6.3%,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용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

구 분		학부모 의 재정적 지원 용이	학부모 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	학교 경영의 민주성 확보	학교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	교사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4 (3.9)	31 (30.4)	21 (20.6)	24 (23.5)	16 (15.7)	6 (5.9)	102 (38.1)	4.05 (5)	0.542
	여	6 (3.6)	50 (30.1)	23 (13.9)	36 (21.7)	40 (24.1)	11 (6.6)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4 (8.5)	15 (31.9)	4 (8.5)	8 (17.0)	14 (29.8)	2 (4.3)	47 (17.5)	16.35 (10)	0.090
	10~20년 미만	-	29 (28.4)	21 (20.6)	29 (28.4)	17 (16.7)	6 (5.9)	102 (38.1)		
	20년 이상	6 (5.0)	37 (31.1)	19 (16.0)	23 (19.3)	25 (21.0)	9 (7.6)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 (1.5)	26 (40.0)	6 (9.2)	8 (12.3)	20 (30.8)	4 (6.2)	65 (24.3)	18.34 (10)	0.049*
	12~35학급	3 (3.8)	24 (30.0)	17 (21.3)	22 (27.5)	9 (11.3)	5 (6.3)	80 (29.9)		
	36학급 이상	6 (4.9)	31 (25.2)	21 (17.1)	30 (24.4)	27 (22.0)	8 (6.5)	123 (45.9)		
학교운 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2 (1.6)	41 (32.0)	16 (12.5)	22 (17.2)	38 (29.7)	9 (7.0)	128 (47.8)	17.85 (5)	0.003**
	무경험	8 (5.7)	40 (28.6)	28 (20.0)	38 (27.1)	18 (12.9)	8 (5.7)	140 (52.2)		
계		10 (3.7)	81 (30.2)	44 (16.4)	60 (22.4)	56 (20.9)	17 (6.3)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효과는 학교 경영의 민주성 확보라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사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

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효과는 교사 및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라고 인식하였고, 10~20년 미만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학교 경영의 민주성 확보라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적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효과는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라고 인식하였고, 12~35학급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34$, $p<.05$).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효과는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라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85$, $p<.01$).

⑧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역효과는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의 곤란 19.8%, 기타 9.7%,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심화 7.1%, 학교장과 교사의 갈등 심화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299%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으로 인한 역효과가 없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

가 역효과라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직 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역효과는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의 곤란이라고 인식하였고,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역효과라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2.57$, $p<.001$).

<표 IV-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

구 분		학교장 과 교사의 갈등 심화	학부모 와 교사의 갈등 심화	학교장 의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의 곤란	학교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	역효과 가 없다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4 (3.9)	8 (7.8)	19 (18.6)	26 (25.5)	39 (38.2)	6 (5.9)	102 (38.1)	7.66 (5)	0.176
	여	6 (3.6)	11 (6.6)	34 (20.5)	54 (32.5)	41 (24.7)	20 (12.0)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2 (4.3)	3 (6.4)	4 (8.5)	16 (34.0)	16 (34.0)	6 (12.8)	47 (17.5)		
	10~20년 미만	-	12 (11.8)	20 (19.6)	42 (41.2)	21 (20.6)	7 (6.9)	102 (38.1)	32.57 (10)	0.000***
	20년 이상	8 (6.7)	4 (3.4)	29 (24.4)	22 (18.5)	43 (36.1)	13 (10.9)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 (1.5)	4 (6.2)	15 (23.1)	17 (26.2)	20 (30.8)	8 (12.3)	65 (24.3)		
	12~35학급	2 (2.5)	8 (10.0)	10 (12.5)	25 (31.3)	28 (35.0)	7 (8.8)	80 (29.9)	9.19 (10)	0.514
	36학급 이상	7 (5.7)	7 (5.7)	28 (22.8)	38 (30.9)	32 (26.0)	11 (8.9)	123 (45.9)		
학교운 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4 (3.1)	8 (6.3)	24 (18.8)	36 (28.1)	44 (34.4)	12 (9.4)	128 (47.8)	2.57 (5)	0.766
	무경험	6 (4.3)	11 (7.9)	29 (20.7)	44 (31.4)	36 (25.7)	14 (10.0)	140 (52.2)		
계		10 (3.7)	19 (7.1)	53 (19.8)	80 (29.9)	80 (29.9)	26 (9.7)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와 36학급 이상 교사가 12~35학급 교사보

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역효과는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의 곤란이라고 인식하였고, 12~15학급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역효과가 없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으로 인한 역효과가 없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역효과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⑨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학교경영에의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학교경영에의 반영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학교 경영에의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5.6%로 적었으며, 보통이다에 42.2%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38$, $p<.001$).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규모별로는 36학급 이상 교사가 35학급 이하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4>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학교경영에의 반영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df)	p
성별	남	-	1 (1.0)	37 (36.3)	53 (52.0)	11 (10.8)	102 (38.1)	11.38 (4)	0.023*
	여	3 (1.8)	11 (6.6)	76 (45.8)	65 (39.2)	11 (6.6)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	2 (4.3)	25 (53.2)	14 (29.8)	6 (12.8)	47 (17.5)	12.46 (8)	0.132
	10~20년 미만	1 (1.0)	8 (7.8)	42 (41.2)	43 (42.2)	8 (7.8)	102 (38.1)		
	20년 이상	2 (1.7)	2 (1.7)	46 (38.7)	61 (51.3)	8 (6.7)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 (1.5)	2 (3.1)	28 (43.1)	27 (41.5)	7 (10.8)	65 (24.3)	5.28 (8)	0.727
	12~35학급	-	4 (5.0)	37 (46.3)	31 (38.8)	8 (10.0)	80 (29.9)		
	36학급 이상	2 (1.6)	6 (4.9)	48 (39.0)	60 (48.8)	7 (5.7)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	6 (4.7)	51 (39.8)	62 (48.4)	9 (7.0)	128 (47.8)	4.58 (4)	0.334
	무경험	3 (2.1)	6 (4.3)	62 (44.3)	56 (40.0)	13 (9.3)	140 (52.2)		
계		3 (1.1)	12 (4.5)	113 (42.2)	118 (44.0)	22 (8.2)	268 (100.0)		

* p<.05, ** p<.01, *** p<.001

2)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한 견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 15>와 같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교사가 39.6%로, 찬성하는 교사 20.5%보다 많았으며, 중립적 입장은 교사는 39.9%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V-15>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한 견해

구 분		찬성한다	중립 입장이다	반대한다	계	χ^2 (df)	p
성별	남	23 (22.5)	30 (29.4)	49 (48.0)	102 (38.1)	7.89 (2)	0.019*
	여	32 (19.3)	77 (46.4)	57 (34.3)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17 (36.2)	21 (44.7)	9 (19.1)	47 (17.5)	18.94 (4)	0.001**
	10~20년 미만	24 (23.5)	40 (39.2)	38 (37.3)	102 (38.1)		
	20년 이상	14 (11.8)	46 (38.7)	59 (49.6)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3 (20.0)	18 (27.7)	34 (52.3)	65 (24.3)	7.60 (4)	0.108
	12~35학급	14 (17.5)	36 (45.0)	30 (37.5)	80 (29.9)		
	36학급 이상	28 (22.8)	53 (43.1)	42 (34.1)	123 (45.9)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30 (23.4)	39 (30.5)	59 (46.1)	128 (47.8)	9.15 (2)	0.010*
	무경험	25 (17.9)	68 (48.6)	47 (33.6)	140 (52.2)		
계		55 (20.5)	107 (39.9)	106 (39.6)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89$, $p<.05$).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94$, $p<.01$).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작을수록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15$, $p<.05$).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해 교사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6>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의 구성 비율이 적당하다 28.7%, 각 위원들을 같은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10.1%,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 4.9%, 지역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현재의 구성 비율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15$, $p<.05$). 교직경력별로는 20년 이상 교사가 20년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0~20년 미만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현재의 구성 비율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5.18$, $p<.01$).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36학급 이상 교사가 35학급 이하 교사보다 각 위원들을 같은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 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각 위원들을 같은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06$, $p<.01$).

<표 IV-1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

구 분		지역 위원회 비율을 늘여야 한다	교원 위원회 비율을 늘여야 한다	학부모 위원회 비율을 늘여야 한다	각 위원회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구성 비율이 적당하다 한다	계	χ^2 (df)	p
성별	남	1 (1.0)	47 (46.1)	6 (5.9)	8 (7.8)	40 (39.2)	102 (38.1)	12.15 (4)	0.016*
	여	9 (5.4)	94 (56.6)	7 (4.2)	19 (11.4)	37 (22.3)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4 (8.5)	26 (55.3)	6 (12.8)	4 (8.5)	7 (14.9)	47 (17.5)	25.18 (8)	0.001**
	10~20년 미만	2 (2.0)	45 (44.1)	4 (3.9)	17 (16.7)	34 (33.3)	102 (38.1)		
	20년 이상	4 (3.4)	70 (58.8)	3 (2.5)	6 (5.0)	36 (30.3)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3 (4.6)	39 (60.0)	-	3 (4.6)	20 (30.8)	65 (24.3)	12.48 (8)	0.131
	12~35학급	4 (5.0)	36 (45.0)	6 (7.5)	7 (8.8)	27 (33.8)	80 (29.9)		
	36학급 이상	3 (2.4)	66 (53.7)	7 (5.7)	17 (13.8)	30 (24.4)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5 (3.9)	70 (54.7)	-	11 (8.6)	42 (32.8)	128 (47.8)	14.06 (4)	0.007**
	무경험	5 (3.6)	71 (50.7)	13 (9.3)	16 (11.4)	35 (25.0)	140 (52.2)		
계		10 (3.7)	141 (52.6)	13 (4.9)	27 (10.1)	77 (28.7)	268 (100.0)		

* p<.05, ** p<.01, *** p<.001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학교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32.8%,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10.8%, 교원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7.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65$, $p<.05$).

<표 IV-1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견해

구 분		교원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 위원회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계	χ^2 (df)	p
성별	남	6 (5.9)	48 (47.1)	8 (7.8)	40 (39.2)	102 (38.1)	4.26 (3)	0.234
	여	15 (9.0)	82 (49.4)	21 (12.7)	48 (28.9)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7 (14.9)	30 (63.8)	5 (10.6)	5 (10.6)	47 (17.5)	16.65 (6)	0.011*
	10~20년 미만	4 (3.9)	46 (45.1)	12 (11.8)	40 (39.2)	102 (38.1)		
	20년 이상	10 (8.4)	54 (45.4)	12 (10.1)	43 (36.1)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4 (6.2)	37 (56.9)	4 (6.2)	20 (30.8)	65 (24.3)	14.29 (6)	0.027*
	12~35학급	2 (2.5)	36 (45.0)	15 (18.8)	27 (33.8)	80 (29.9)		
	36학급 이상	15 (12.2)	57 (46.3)	10 (18.8)	41 (33.3)	123 (45.9)		
학교운영 위원회 경험 유무	경험	9 (7.0)	59 (46.1)	8 (6.3)	52 (40.6)	128 (47.8)	9.76 (3)	0.021*
	무경험	12 (8.6)	71 (50.7)	21 (15.0)	36 (25.7)	140 (52.2)		
계		21 (7.8)	130 (48.5)	29 (10.8)	88 (32.8)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36학급 이상 교사가 35학급 이상 교사보다 교원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29$, $p<.05$).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76$, $p<.05$).

④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희망자 등록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2.3%,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9.7%,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거수로 선출한다 6.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88$, $p<.05$). 교직경력별로는 교

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8>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구 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거수로 선출한다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희망자 등록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계	χ^2 (df)	p
성별	남	82 (80.4)	1 (1.0)	7 (6.9)	12 (11.8)	102 (38.1)	9.88 (3)	0.020*
	여	111 (66.9)	15 (9.0)	19 (11.4)	21 (12.7)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29 (61.7)	5 (10.6)	6 (12.8)	7 (14.974)	47 (17.5)	9.51 (6)	0.147
	10~20년 미만	74 (72.5)	5 (4.9)	6 (5.9)	17 (16.7)	102 (38.1)		
	20년 이상	90 (75.6)	6 (5.0)	14 (11.8)	9 (7.6)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53 (81.5)	4 (6.2)	-	8 (12.3)	65 (24.3)	18.26 (6)	0.006**
	12~35학급	46 (57.5)	6 (7.5)	14 (17.5)	14 (17.5)	80 (29.9)		
	36학급 이상	94 (76.4)	6 (4.9)	12 (9.8)	11 (8.9)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100 (78.1)	6 (4.7)	4 (3.1)	18 (14.1)	128 (47.8)	13.48 (3)	0.004**
	무경험	93 (66.4)	10 (7.1)	22 (15.7)	15 (10.7)	140 (52.2)		
계		193 (72.0)	16 (6.0)	26 (9.7)	33 (12.3)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2~35학급 교사는 다른 교사보

다 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26$, $p<.01$).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48$, $p<.01$).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9>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22.8%, 학부모 단체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6.0%, 기타 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64$, $p<.05$). 교직경력별로는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0년 미만 교사는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년별

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9>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견해

구 분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학부모 단체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80 (78.4)	16 (15.7)	3 (2.9)	3 (2.9)	102 (38.1)	8.64 (3)	0.035*
	여	103 (62.0)	45 (27.1)	13 (7.8)	5 (3.0)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31 (66.0)	12 (25.5)	4 (8.5)	-	47 (17.5)	4.62 (6)	0.593
	10~20년 미만	72 (70.6)	21 (20.6)	4 (3.9)	5 (4.9)	102 (38.1)		
	20년 이상	80 (67.2)	28 (23.5)	8 (6.7)	3 (2.5)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50 (76.9)	14 (21.5)	-	1 (1.5)	65 (24.3)	8.15 (6)	0.227
	12~35학급	50 (62.5)	19 (23.8)	7 (8.8)	4 (5.0)	80 (29.9)		
	36학급 이상	83 (67.5)	28 (22.8)	9 (7.3)	3 (2.4)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98 (76.6)	22 (17.2)	3 (2.3)	5 (3.9)	128 (47.8)	11.90 (3)	0.008**
	무경험	85 (60.7)	39 (27.9)	13 (9.3)	3 (2.1)	140 (52.2)		
계		183 (68.3)	61 (22.8)	16 (6.0)	8 (3.0)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2~35학급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

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90$, $p<.01$).

⑥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적격자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적격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0>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관계 종사자나 유경험자 33.2%, 동창 회원 15.3%, 학교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 11.9%,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육관계 종사자나 유경험자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65$, $p<.01$).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학교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20년 미만 교사가 20년 이상 교사보다 동창회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10$, $p<.05$).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클수록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학교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규모가 적을수록 교육관계 종사자나 유경험자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01$,

p<.05).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교육관계 종사자나 유경험자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39$, p<.01).

<표 IV-20>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적격자에 대한 견해

구 분		동창회원	덕망 있는 지역인사	학교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	교육관계 종사자나 유경험자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17 (16.7)	44 (43.1)	18 (17.6)	20 (19.6)	3 (2.9)	102 (38.1)	15.65 (4)	0.004**
	여	24 (14.5)	55 (33.1)	14 (8.4)	69 (41.6)	4 (2.4)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10 (21.3)	19 (40.4)	2 (4.3)	15 (31.9)	1 (2.1)	47 (17.5)	20.10 (8)	0.010*
	10~20년 미만	23 (22.5)	31 (30.4)	11 (10.8)	32 (31.4)	5 (4.9)	102 (38.1)		
	20년 이상	8 (6.7)	49 (41.2)	19 (16.0)	42 (35.3)	1 (0.8)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8 (12.3)	30 (46.2)	4 (6.2)	23 (35.4)	-	65 (24.3)	19.01 (8)	0.015*
	12~35학급	20 (25.0)	25 (31.3)	6 (7.5)	27 (33.8)	2 (2.5)	80 (29.9)		
	36학급 이상	13 (10.6)	44 (35.8)	22 (17.9)	39 (31.7)	5 (4.1)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19 (14.8)	62 (48.4)	11 (8.6)	34 (26.6)	2 (1.6)	128 (47.8)	15.39 (4)	0.004**
	무경험	22 (15.7)	37 (26.4)	21 (15.0)	55 (39.3)	5 (3.6)	140 (52.2)		
계		41 (15.3)	99 (36.9)	32 (11.9)	89 (33.2)	7 (2.6)	268 (100.0)		

* p<.05, ** p<.01, *** p<.001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기능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기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29.9%,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 18.3%, 학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 1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경영에의 기능에 대한 견해

구 분		학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	학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	계	χ^2 (df)	p
성별	남	15 (14.7)	23 (22.5)	16 (15.7)	48 (47.1)	102 (38.1)	7.30 (3)	0.063
	여	14 (8.4)	57 (34.3)	33 (19.9)	62 (37.3)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4 (8.5)	15 (31.9)	4 (8.5)	24 (51.1)	47 (17.5)	11.80 (6)	0.067
	10~20년 미만	15 (14.7)	36 (35.3)	17 (16.7)	34 (33.3)	102 (38.1)		
	20년 이상	10 (8.4)	29 (24.4)	28 (23.5)	52 (43.7)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5 (7.7)	18 (27.7)	13 (20.0)	29 (44.6)	65 (24.3)	10.85 (6)	0.093
	12~35학급	10 (12.5)	29 (36.3)	6 (7.5)	35 (43.8)	80 (29.9)		
	36학급 이상	14 (11.4)	33 (26.8)	30 (24.4)	46 (37.4)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20 (15.6)	28 (21.9)	25 (19.5)	55 (43.0)	128 (47.8)	10.88 (3)	0.012*
	무경험	9 (6.4)	52 (37.1)	24 (17.1)	55 (39.3)	140 (52.2)		
계		29 (10.8)	80 (29.9)	49 (18.3)	110 (41.0)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학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2~35학급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8$, p<.05).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견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협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

교경영 전반에 관해 모두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26.5%, 학교운영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한다 15.7%,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한다 1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견해

구 분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한다	학교운영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한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한다	학교경영 전반에 관해 모두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계	χ^2 (df)	p
성별	남	14 (13.7)	10 (9.8)	47 (46.1)	31 (30.4)	102 (38.1)	4.84 (3)	0.184
	여	19 (11.4)	32 (19.3)	75 (45.2)	40 (24.1)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6 (12.8)	8 (17.0)	19 (40.4)	14 (29.8)	47 (17.5)	12.46 (6)	0.052
	10~20년 미만	13 (12.7)	24 (23.5)	46 (45.1)	19 (18.6)	102 (38.1)		
	20년 이상	14 (11.8)	10 (8.4)	57 (47.9)	38 (31.9)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5 (23.1)	4 (6.2)	26 (40.0)	20 (30.8)	65 (24.3)	25.55 (6)	0.000***
	12~35학급	10 (12.5)	18 (22.5)	42 (52.5)	10 (12.5)	80 (29.9)		
	36학급 이상	8 (6.5)	20 (16.3)	54 (43.9)	41 (33.3)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20 (15.6)	12 (9.4)	55 (43.0)	41 (32.0)	128 (47.8)	11.57 (3)	0.009**
	무경험	13 (9.3)	30 (21.4)	67 (47.9)	30 (21.4)	140 (52.2)		
계		33 (12.3)	42 (15.7)	122 (45.5)	71 (26.5)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 전반에 관해 모두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였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적을 수록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현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36학급 이상 교사가 35학급 이하 교사보다 학교경영 전반에 관해 모두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5.55$, $p<.001$).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운영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57$, $p<.01$).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요망되는 학교장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강조되는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로 전문적인 학교경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전체 조직의 통합자로서의 역할 21.6%,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17.9%, 학교전체 구성원들간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13.1%,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요망되는 학교장의 역할

구 분		학교 전체 조직의 통합자로서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전문적인 학교경영 관리자로서의 역할	학교전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22 (21.6)	17 (16.7)	50 (49.0)	13 (12.7)	-	102 (38.1)	2.96 (4)	0.564
	여	36 (21.7)	31 (18.7)	73 (44.0)	22 (13.3)	4 (2.4)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8 (17.0)	8 (17.0)	20 (42.6)	11 (23.4)	-	47 (17.5)	14.63 (8)	0.067
	10~20년 미만	19 (18.6)	13 (12.7)	55 (53.9)	12 (11.8)	3 (2.9)	102 (38.1)		
	20년 이상	31 (26.1)	27 (22.7)	48 (40.3)	12 (10.1)	1 (0.8)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8 (27.7)	15 (23.1)	20 (30.8)	10 (15.4)	2 (3.1)	65 (24.3)	14.38 (8)	0.072
	12~35학급	16 (20.0)	8 (10.0)	43 (53.8)	13 (16.3)	-	80 (29.9)		
	36학급 이상	24 (19.5)	25 (20.3)	60 (48.8)	12 (9.8)	2 (1.6)	123 (45.9)		
학교운영 위원 경험 유무	경험	26 (20.3)	27 (21.1)	55 (43.0)	20 (15.6)	-	128 (47.8)	6.94 (4)	0.139
	무경험	32 (22.9)	21 (15.0)	68 (48.6)	15 (10.7)	4 (2.9)	140 (52.2)		
계		58 (21.6)	48 (17.9)	123 (45.9)	35 (13.1)	4 (1.5)	268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로 전문적인 학교경영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로 학교 전체 조직의 통합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학교전체구성원들간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규모별로는 11학급 이하 교사가 12학급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로 학교 전체 조직의 통합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12~35학급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전문적인 학교경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여부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이 없는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전문적인 학교경영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비요건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비요건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비요건으로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의 표출을 인식하는 교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와 학부모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23.1%, 교육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 개발 17.9%, 학교운영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노력 4.5%, 권위주의 의식의 불식 4.1%,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은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의 표출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육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계발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

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들은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 표출을 갖추어야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24>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비요건

구 분		권위주의 의식의 불식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의 표출	교육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 계발	학교운영위원 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노력	학교와 학부모 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5 (4.9)	53 (52.0)	13 (12.7)	8 (7.8)	23 (22.5)	-	102 (38.1)	8.99 (5)	0.110
	여	6 (3.6)	79 (47.6)	35 (21.1)	4 (2.4)	39 (23.5)	3 (1.8)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2 (4.3)	33 (70.2)	4 (8.5)	1 (2.1)	7 (14.9)	-	47 (17.5)	16.84 (10)	0.078
	10~20년 미만	4 (3.9)	45 (44.1)	23 (22.5)	4 (3.9)	23 (22.5)	3 (2.9)	102 (38.1)		
	20년 이상	5 (4.2)	54 (45.4)	21 (17.6)	7 (5.9)	32 (26.9)	-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3 (4.6)	36 (55.4)	6 (9.2)	3 (4.6)	15 (23.1)	2 (3.1)	65 (24.3)	16.54 (10)	0.085
	12~35학급	1 (1.3)	45 (56.3)	19 (23.8)	2 (2.5)	13 (16.3)	-7 (29.9)	80 (29.9)		
	36학급 이상	7 (5.7)	51 (41.5)	23 (18.7)	7 (5.7)	34 (27.6)	1 (0.8)	123 (45.9)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2 (1.6)	63 (49.2)	17 (13.3)	7 (5.5)	39 (30.5)	-	128 (47.8)	15.77 (5)	0.008**
	무경험	9 (6.4)	69 (49.3)	31 (22.1)	5 (3.6)	23 (16.4)	3 (2.1)	140 (52.2)		
계		11 (4.1)	132 (49.3)*	48 (17.9)	12 (4.5)	62 (23.1)	3 (1.1)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12~35학급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들은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의 표

출과 그리고 교육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36학급 이상 교사는 35학급 이하 교사보다 학교와 학부모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들은 학교와 학부모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교육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 계발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77$, $p<.01$).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5>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적극적 활동 34.0%,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13.1%, 교육 정책적 지원 7.8%,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 5.6%,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육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69$, $p<.05$).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5>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구 분		학부모 들의 이해와 참여	교사들 의 관심과 참여	학교장 의 이해와 협조	학교운 영위원 들의 적극적 활동	교육 정책적 지원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42 (41.2)	18 (17.6)	1 (1.0)	35 (34.3)	4 (3.9)	2 (2.0)	102 (38.1)	12.69 (5)	0.026*
	여	59 (35.5)	17 (10.2)	14 (8.4)	56 (33.7)	17 (10.2)	3 (1.8)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16 (34.0)	4 (8.5)	4 (8.5)	17 (36.2)	6 (12.8)	-	47 (17.5)	10.67 (10)	0.384
	10~20년 미만	35 (34.3)	15 (14.7)	6 (5.9)	32 (31.4)	11 (10.8)	3 (2.9)	102 (38.1)		
	20년 이상	50 (42.0)	16 (13.4)	5 (4.2)	42 (35.3)	4 (3.4)	2 (1.7)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26 (40.0)	8 (12.3)	1 (1.5)	21 (32.3)	5 (7.7)	4 (6.2)	65 (24.3)	15.24 (10)	0.124
	12~35학급	35 (43.8)	8 (10.0)	4 (5.0)	26 (32.5)	7 (8.8)	-	80 (29.9)		
	36학급 이상	40 (32.5)	19 (15.4)	10 (8.1)	44 (35.8)	9 (7.3)	1 (0.8)	123 (45.9)		
학교운 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53 (41.4)	16 (12.5)	3 (2.3)	48 (37.5)	6 (4.7)	2 (1.6)	128 (47.8)	9.72 (5)	0.084
	무경험	48 (34.3)	19 (13.6)	12 (8.6)	43 (30.7)	15 (10.7)	3 (2.1)	140 (52.2)		
계		101 (37.7)	35 (13.1)	15 (5.6)	91 (34.0)	21 (7.8)	5 (1.9)	268 (100.0)		

* p<.05, ** p<.01, *** p<.001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클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의 적극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12~35학급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교육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6>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조정의 풍토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13.1%,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실질적인 반영 8.2%, 학교 경영 책임자의 인식변화 7.8%,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 부여 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조정의 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30$, $p<.05$). 교직경력별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 학교 경영 책임자의 인식변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규모별로는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36학급 이상 교사가 35학급 이하 교사보다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 조정의 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 경험유무별로는 학교운영 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 조정의 풍토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6>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항

구 분		학교 경영 책임자 의 인식 변화	민주적 인 참여와 의견 조정의 풍토 조성	학교운 영위원회 의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학교운 영위원회 의 결정 사항의 실질적 인 반영	학교운 영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 부여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6 (5.9)	64 (62.7)	21 (20.6)	5 (4.9)	6 (5.9)	-	102 (38.1)	14.30 (5)	0.014*
	여	15 (9.0)	113 (68.1)	14 (8.4)	17 (10.2)	4 (2.4)	3 (1.8)	166 (61.9)		
교직 경력	10년 미만	1 (2.1)	38 (80.9)	6 (12.8)	2 (4.3)	-	-	47 (17.5)	16.48 (10)	0.087
	10~20년 미만	9 (8.8)	59 (57.8)	18 (17.6)	8 (7.8)	5 (4.9)	3 (2.9)	102 (38.1)		
	20년 이상	11 (9.2)	80 (67.2)	11 (9.2)	12 (10.1)	5 (4.2)	-	119 (44.4)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5 (7.7)	43 (66.2)	10 (15.4)	3 (4.6)	2 (3.1)	2 (3.1)	65 (24.3)	13.88 (10)	0.179
	12~35학급	3 (3.8)	50 (62.5)	11 (13.8)	12 (15.0)	4 (5.0)	-	80 (29.9)		
	36학급 이상	13 (10.6)	84 (68.3)	14 (11.4)	7 (5.7)	4 (3.3)	1 (0.8)	123 (45.9)		
학교운 영위원 경험 유무	경험	9 (7.0)	92 (71.9)	16 (12.5)	6 (4.7)	5 (3.9)	-	128 (47.8)	7.99 (5)	0.157
	무경험	12 (8.6)	85 (60.7)	19 (13.6)	16 (11.4)	5 (3.6)	3 (2.1)	140 (52.2)		
계		21 (7.8)	177 (66.0)	35 (13.1)	22 (8.2)	10 (3.7)	3 (1.1)	268 (100.0)		

* p<.05, ** p<.01, *** p<.001

3. 종합 논의

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효과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등 2개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으며, 교직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널리 홍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둘째, 교사들은 학교장의 당연직 교원위원 포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교사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의 긍정적 기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타당성 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격상 순수심의기구이므로 결정사항의 강제적 이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인식과 심의사항 각각의 타당성

정도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규모가 11학급 이하인 교사와 36학급 이상인 교사가 12~35학급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이전 모든 학교의 교육적 활동들이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합의체의 힘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항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영역에서는 심의사항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이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7일 전에 알게 된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교사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1~2일 전에 알게 된 교사가 많았다. 따라서 심도 있는 회의안건 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도록 배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교규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와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회의일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넷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교규모가 11학급 이하인 교사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및 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를 하여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참관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청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로 인해 자신의 소신과 권위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동 관심자로 인식하여 진지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사들은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규모가 클수

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이 있는 교사가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학부모위원회는 학교풍토의 선진화를 실현시키는 전체 학부모의 대변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교사들은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라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의 곤란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라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응답한 것은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로 인해 안전 상정,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등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기게 된 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보여 여기에 대한 대안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특히, 소규모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홉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의거할 때, 학교 경영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도입초기의 근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선 방안들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명실공히 교육의 단위학교

자치를 구현하고 지역과 학교간에 교육공동체를 구축,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그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 뿌리가 정착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세부 운영규칙의 적용·해석과 실행 등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뒤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위원장의 자격,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지역의원 적격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사항에 대한 견해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운영위원의 구비 요건, 개선점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첫째,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교사가 반대하는 교사보다 많았으며, 남자교사와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에 대해 반대하였다. 교육의 최종 대상이 되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여자교사와 20년 이상,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의 홍보와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이 풍부한 교원위원의 비율이 상향조정되어야 책임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와 11학급 이하 교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교원위원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자칫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교사와 11학급 이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교원위원들은 업무가 가중되거나 학교장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영위원으로 나서기를 기피하고 있는 편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교사와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시간을 빼앗기거나 생업에 지장을 받으므로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선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위원 선출 시 후보자수가 정수이거나 정수 이내여서 투표 없이 선출하는 경우와 정수를 채우지 못하여 고심하는 학교도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여섯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인사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와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교규모가 클수록,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학교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비록 같은 동네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일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재학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학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 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경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회계에 관한 감사기구로 생각하여 심의·자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어 종종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모든 위원이 안건 발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로 전문적인 학교경영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은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의 표출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와 학부모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학교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통한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면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호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참여의 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 조정의 풍토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의 운영 실태 및 효과 측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질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효과 측면에 대한 인식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인식 조사 분석결과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결과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 기능을 하고, 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타당하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영역에서는 심의사항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 인식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학교 경영 및 학습에 학부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원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보다 활성화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 예정일 7일 전에 알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노력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를 지키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고 있었다.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에는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이고,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은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겨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측면에서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교사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다.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측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의결·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의 기능을 하고, 현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학교예산 편성, 운동회, 학예회, 현장학습,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 학교 교육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므로 학교운영에 대하여 투명성이 확보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빌어 일부 반대 의견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당당히 답변할 수 있어 학교장도 능동적으로 소신 있게 학교경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는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전문적인 학교경영관리자로서의 역할 강조와 학교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견해 표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의 리더로 운영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교육현장의 문제를 진솔하게 교육 수요자와 함께 고뇌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개방적 태도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 조정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중대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학교풍토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매개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

체 학부모의 대변자로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출함에 있어서 좀 더 충분한 홍보와 다수의 학부모 참여와 지역인사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표성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학교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감·교육위원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교육감의 당락에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교사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중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의 정원, 구성 비율 등 학교여건을 고려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학교운영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의 비중이 높은 활동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 활동이 있어야 학교운영, 학교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별 특성을 살려 교육활동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의 의식이 과거의 방관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지원자의 자세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 교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별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 필요성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결과에서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은 물론, 회의 소집을 하기 위한 운영위들에게의 연락,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안전정리,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홍보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 시켜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불만족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연임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년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에 대하여 알만하면 임기가 종료되므로 교육이나 학교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을 기르기 위한 기회가 부족하므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

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와 예·결산 심의 등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이해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도입 배경, 목적, 성격,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지역주민 및 교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때에만 학교운영위원회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 기능과 활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그를 통한 적극적인 학교교육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역과 학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사안에 따라 부분적 의결 권한도 갖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는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교육의 수혜자이며 학교와 교육을 구성하는 주체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건전한 학생회 활동을 하고 대의기구로서의 학생회에서 민주적 절차

를 통하여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몸소 익히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장학자료, 1998.5.
- 교육개혁위원회,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교육부, 1995.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Ⅱ, 서울: 사회교육문화사, 2000.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을지문화사, 1996.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우수 사례집, 서울: 교육부, 2000.
- 주삼환, 장학교장론 특강, 서울: 성원사, 1998.
- 윤정일 · 송기창 · 조동섭 · 김병주,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2002.
- 전제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2. 논문

- 강사민,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해외교육정보, 1996. 3.
- 김성열, 「학교자율책임경영제의 확립」, 새교육, 1999. 5.
- 김승환,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인길,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정숙, 「외국 학부모의 학교지원 및 참여활동(독일)」, 참교육을 위

- 한 전국학부모회, 1999.
- 박세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조건과 성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00.
- 백승조,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성삼제, 「영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서울교육, 1997.
- 송인호,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해외교육정보, 1996. 2.
- 이석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영남,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연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충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성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희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왜 필요한가」, 교육월보, 1995.

3. 외국문헌

- Oswald. L. J., *School-Based Management: Rational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Oregon School Study Council, 1995.
- Clune. W. H. and White. P. A., *School-Based Management: Institutional Variation, Implementation, and Issue for Further Research*, Center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1998.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Application Scheme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in Elementary School.

Kim, Sun-Hee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Tae-J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a general cognition on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problems in the operational process, if any, and teachers' opinion concerning its developmental applying scheme, and then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its development, fittingly for its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ment.

As the method of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analyzed, and arranged all sorts of literature materials and some previous research papers to construct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study. And to look into teachers' recognition concerning the composition, function, operation & development schemes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the researcher made a questionnaire survey by an empirical practical approach method, and then analyzed the materials collected by use of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0.0 Program. As an analysis technique, frequency & percentage analysis was conducted to look in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X^2 (Chi-Square)verification was made to examine a difference

in recognition among the teacher group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and the contents to be dealt with in this study, with the intention of contributing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look into the composition, function, and operational situations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Second, to grasp the operational actual conditions and the effect aspects of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Third, to propose the developmental scheme of the committee.

Thus, the researcher, after grasping some problems 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 analysis of operational actual conditions and effect aspects in terms of the above three items, would like to proper some developmental schemes of the committee as follows;

First, whe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a unit school should select persons having a representativeness by inducing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many parents of students and men of society with enough publicity.

Second, when considering that the practical operators of school are teachers, increasing the ratio of teachers in composition of its members would be desirable.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should be flexible in its fixed member, the component ratio of members, etc.

Third, student-representatives as members, the final benefitters of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participate positively and their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If it is that way, school operation would go in the right direction.

Fourth, in the activities possessing high educational value, enough pre-discussion should be made. Only it doing so, securing a transparency in school operation, school budget and settlement and making the most of the characteristics by schools is needed so that educational activities can be diversified.

Fifth, the parents of students should change their previous attitude as an onlooker into positive and cooperative one as a supporter. And for democratic, original operation of school, positive participation of both parents

and teachers is needed.

Sixth, from the analysis of recognition of the results of the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it's found that the greatest contrary effect occurred in the operational process is a decreased efficiency in carrying-out school affairs, they think, so positive reform measures should be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al application schemes of school operational committee as follows;

First, to secure the speciality of the committee and for effective consideration, an educational training for teache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eded to make the functions & roles of the committee understand widely among school community members.

Third, self-regulating operation by unit school should be made.

Fourth, enough reflection of students' opinions on it should be made.

[부록]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발전과 2세의 교육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활용방안에 관해 선생님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시는 바를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각 질문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9월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선희 올림

※ 다음은 자료처리에 필요한 기본 문항들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교사 ② 여교사
2. 교직경력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3. 학교규모 : ① 11학급이하 ② 12-35학급 ③ 36학급이상
4. 학교운영위원 경험 유무 : ① 경험 ② 무경험

I.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1~2)

1.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 방식과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I.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4)

3. 귀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여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사항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	매우 타당
①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1	2	3	4	5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1	2	3	4	5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⑥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	2	3	4	5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	2	3	4	5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	2	3	4	5
⑫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	2	3	4	5
⑬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	2	3	4	5
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2	3	4	5
⑮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	2	3	4	5
⑯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1	2	3	4	5

III.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효과에 관한 사항(5~13)

5.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 예정일 1주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귀교에서는 언제 알게 됩니까?

__① 심의 당일 __② 1~2일 전 __③ 3~5일 전 __④ 7일 전

6. 귀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공고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해 일반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토론회, 개별적인 질문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__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② 그렇지 않다 __③ 보통이다
 __④ 그렇다 __⑤ 매우 그렇다

7.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교에서는 회의일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교에서는 이 규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학부모, 교사 등이 원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귀교에서는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관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부모의 통제와 간섭 ② 지역주민의 통제와 간섭
 ③ 교사의 통제와 간섭 ④ 학교장의 통제와 간섭
 ⑤ 교육청의 통제와 간섭 ⑥ 기타 ()

11.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 운영된 후 어떤 면에서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 용이
 ②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이해 증대
 ③ 학교경영의 민주성 확보 ④ 학교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
 ⑤ 교사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⑥ 기타 ()

12.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효과에는 어떤 것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장과 교사의 갈등 심화
- ②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심화
- ③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경영의 곤란
- ④ 학교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
- ⑤ 역효과가 없다
- ⑥ 기타 ()

13. 귀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경영에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IV.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14~25)

14. 교육의 최종 대상이 되는 학생 대표가 미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중립 입장이다
- ③ 반대한다

15. 학교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되 그
비율은 학부모위원을 40-50%, 교원위원을 30-40%, 지역위원을 10-30%
범위 안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
떠합니까?

- ① 지역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
- ③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늘여야 한다
- ④ 각 위원들을 같은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 ⑤ 현재의 구성비율이 적당하다

1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습니까?

- __① 교원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__② 학교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__③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__④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17.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습니까?

- __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__②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거수로 선출한다
- __③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 __④ 희망자 등록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8.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스스로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 __②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동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 __③ 학부모단체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 __④ 기타 ()

19.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으로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동창회원 __② 덕망 있는 지역인사
- __③ 학교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
- __④ 교육관계 종사자나 유경험자
- __⑤ 기타 ()

20.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
- __②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__③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
- __④ 사안에 따라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

2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__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한다
- __② 학교운영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심의한다
- __③ 현행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한다
- __④ 학교경영 전반에 관해 모두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22.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되려면 학교장의 역할 중 어느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교 전체 조직의 통합자로서의 역할
- __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 __③ 전문적인 학교경영 관리자로서의 역할
- __④ 학교 전체 구성원들간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 __⑤ 기타 ()

23.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① 권위주의 의식의 불식
- __②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견해의 표출
- __③ 교육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 계발
- __④ 학교운영위원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노력
- __⑤ 학교와 학부모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__⑥ 기타()

24.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 ②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 ③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 ④ 학교운영위원들의 적극적 활동
- ⑤ 교육정책적 지원 ⑥ 기타 ()

25.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활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조성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경영 책임자의 인식 변화
- ② 민주적인 참여와 의견 조정의 풍토 조성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실질적인 반영
-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 부여
- ⑥ 기타 ()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